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9년 6월 5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 제도 운영의 합리성·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연가제도 운영 개선
 -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8조)
 - 연가 당겨쓰기 제도 개선(안 제20조의 2)
 -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1조)
- 공가 규정 확대(안 제23조)
 - 결핵검진 및 노동조합 대의원회 참석
 - 오염인근지역으로의 출장·파견의 경우 예방접종, 원격지 전보 발령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운영 및 사용기준 명문화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및 사용기준 명문화(안 제24조)
-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위임사항과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연가제도, 공가제도 규정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8조에서는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20조의2에서는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위한 연가 당겨쓰기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20조의3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가 사용 권장제를 도입하였으며,
 - 안 제21조에서는 연도 중 휴직하거나 퇴직 또는 임용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등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를 기하였으며,
 - 안 제23조에서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받거나, 「검역법」에 따른 오염지역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등을 가기 위한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공무원 노동조합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와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등 공가 허가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24조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안 제24조의2 및 별표 5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및 공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00 호
----------	---------

제출연월일: 2019.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가제도 운영 개선

- 1)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8조)
- 2) 연가 당겨쓰기 제도 개선(안 제20조의 2)
- 3)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안 제20조의 3)
- 4)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안 제21조)

나. 공가 규정 확대(안 제23조)

- 1) 결핵검진 및 노동조합 대의원회 참석
- 2) 오염인근지역으로의 출장·과전의 경우 예방접종, 원격지 전보 발령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운영 및 사용기준 명문화

- 1)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및 사용기준 명문화(안 제24조)
- 2)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9. 5. 16. ~ 5. 23. / 7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동율”을 “행동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획득하기에”를 “받기 위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보”를 “팩스, 문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을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으로, “지급하고”를 “지급하는 것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연가 당겨쓰기)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2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12(개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2.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기간(공로퇴직 연수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제23조제5호 중 “건강진단 또는”을 “건강진단.”으로, “때”를 “때 또는 「결핵 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

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제23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4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제24조제12항 중 “불임”을 “난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4조의2 중 “제24조제4항·제6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2 제목 중 “행동율”을 “행동률”로 한다.

별표3의 출산의 배우자란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기준 (제24조의 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times} \frac{\text{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병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다.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 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u>성실</u>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책임완수) ----- ----- ----- <u>성실</u> <u>로써</u> ----- --.</p>
<p>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생략)</p> <p>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u>행동</u>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행동</u> <u>를</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친절, 공정) ① (생략)</p> <p>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u>획득</u>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친절, 공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받기</u> <u>위해</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략)</p> <p>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u>전보</u>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팩스, 문자</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p>제18조(연가일수) ① ----- -----.</p>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생략)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 3. (생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생략)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같음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
-----제25조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

----- 지급하는 것으로 -----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

-----.

<삭 제>

제20조의 2(연가 당겨쓰기)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 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20조의 3(연가 사용의 권장) ① 구청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단서 신설>

②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④ (생략)
<신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

직한 경우는 제외

- 2. 연도 중 신규 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기간(공로 퇴직연수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

제23조(공가)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건

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9. (생략)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신설>

제24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강진단, -----
----- 건강검진을 받을 때 또는 「결핵 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

6. ~ 9. (현행과 같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⑦ ~ ⑨ 삭 제

⑩ · ⑪ (생 략)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 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 ~ ⑮ (생 략)

<신 설>

제24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1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 제1항·제3항, 제24조제4항·제6항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무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 난임

⑬ ~ ⑮ (현행과 같음)

⑯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4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

----- 제24조제4항 -----

따른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휴가기준(제24조의 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시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휴가기준(제24조의 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시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다.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병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 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병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ligned} & \text{「지방공무원 복무} && \text{시간선택제공무원} \\ & \text{규정」} && \text{등의 주당근무시간} \\ & \text{제7조의5제1항} & \times & \text{공무원의 주당} & \times 8 \\ & \text{또는 제2항에} && \text{근무시간} \\ & \text{따른 병가 일수} && \end{aligned}$$

다.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 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않는다.